

서울교육대학교와 (사)디지털미디어교육콘텐츠교사연구협회 간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서울교육대학교와 (사)디지털미디어교육콘텐츠교사연구협회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 달성과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본 협약에서 양자를 통칭하여 “양 기관” 이라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미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에 대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내용) 양 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상호 지원 및 협력
2. 미래 교육 환경 대응 및 사회공헌 활동과 관련한 상호 협조
3. 예비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4. 기타 양 기관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단,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3조(협약의 변경·해지) ① 양 기관은 상호 협의에 따라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일방은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양 기관이 협약 해지에 합의한 경우
2. 일방 당사자가 협약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3. 기관 내부 사정으로 협약 유지가 곤란한 경우
4.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4조(비밀 유지 및 손해배상) ①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 기관의 업무상 비밀 또는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협약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다.

② 어느 일방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 기관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상대 기관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반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효력 및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② 협약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 연장에 대한 서면 합의 또는 연장 의사 통보가 없는 경우, 본 협약은 별도의 해지 절차 없이 기간 만료일에 자동 종료된다.

제6조(기타)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이 별도의 서면합의를 통해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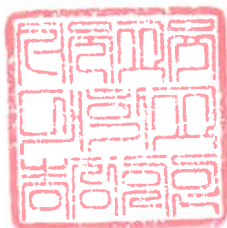
본 협약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양 기관이 서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3월 23일



서울교육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장 신 호



디지털미디어교육콘텐츠 교사연구협회
몽당분필

(사)디지털미디어교육콘텐츠
교사연구협회
대표이사 박 준 호

